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5
----------	-----

2022. 3. 15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3년 3월 7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3월 15일

- 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충청북도지사)

가. 제안사유

- 도 의회 정책지원관 인력 증원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<정원 조정사항>

○ 정원의 총수 (안 제2조)

- 총 정원 : 4,819명 → 4,828명 (+9명)
- 집행기관의 정원 : 1,823명 → 1,822명 (△1명)
- 소방공무원 정원 : 2,845명(변동 없음)
- 교육공무원 정원 : 43명(변동 없음)
- 의회사무처 정원 : 89명 → 99명 (+10명)
-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: 19명(변동 없음)

○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(안 별표 2)

- 6급 : 35.5% 이내 → 35.7% 이내
- 전문경력관 : 1.5% 이내 → 1.3% 이내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서정호)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내용 제41조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로써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, 행정안전부는 지침으로 2년 걸쳐 1년차에 의원정수의 4분의 1, 2년차에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채용하도록 하였음.
- 우리 도 12대 의회의 의원정수는 35명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근거하여 17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,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1년차인 지난 2022년에 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였고, 2년

차인 2023년에 9명을 추가로 채용하기 위하여는 “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” 를 개정하여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,819 명에서 4,828명으로 9명 증원할 필요성 있음.

-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년차 정책지원관 9명 채용에 따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9명 증원내용과 증원된 정책지원관의 의회사무처 배속 및 의회사무처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추가 인원 필요에 따라 집행기관의 정원 1명을 의회사무처 정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존 의회사무처 정원 89명에서 99명으로 10명 증원되었음.
- 정책지원관 9명 증원을 위한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변경과 그 내용을 반영한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과 연도별 비용 추계결과, 재원 조달방안 등의 내용이 합리적이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타당하다고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4,819명”을 “4,828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1,823명”을 “1,822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89명”을 “99명”으로 한다.
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초과 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[별표 2]

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 · 9급	전문경력관
비 율	6% 이내	19% 이내	35.7% 이내	34% 이내	4% 이상	1.3% 이내

2. 연구직 · 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20% 이내	80% 이상	26% 이내	74% 이상

3. 소방직공무원

구 분	소방정 이상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비 율	1% 이내	3.5% 이내	10% 이내	12.5% 이내	18% 이내	29% 이내	26% 이상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4급상당 이상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34% 이내	26% 이내	10% 이내	10% 이내	18% 이내	2% 이상

※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 청	의 회	직속기관	사업소	출장소	합의제 행정기관
총 계	4,828	-					
정무직 계	3	1					2
도지사	1	1					
위원장	1						1
상임위원	1						1
일반직 계	1,695	-					
1~2급	1					1	
2~3급	2	1	1				
3급	12	10		1		1	
3~4급	2	2					
4급	78	52	8	5	7	5	1
5급이하 소계	1,584	-					
전문경력관 소계	16	-					
별정직 계	12	-					
1급 상당	1	1					
4급 상당	3	3					
5급상당 이하 소계	8	-					
연구직 계	199	-					
연구관	32			31	1		
연구사	167	-					
지도직 계	31	-					
지도관	6			6			
지도사	25	-					
소방직 계	2,845	-					
소방정	18	5		13			
소방령이하	2,827	-					
교육공무원 계	43	-					
총장	1			1			
교수·부교수· 조교수·전임강사	31			31			
조교	11	-					

※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충청북도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<u>4,819명</u>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1,823명</u></p> <p>2. · 3. (생 략)</p> <p>4. 의회사무처의 정원 : <u>89명</u></p> <p>5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<u>4,828명</u>----- ----- .</p> <p>1. ----- <u>1,822명</u></p> <p>2. ·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<u>99명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관련 법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2. 삭제
3.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5. 합의회 행정기관의 정원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시·도의 5급 이하(시·군·구는 6급 이하)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개정 사유

- 도 의회 정책지원관 확보 및 기구 개편 등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2. 비용 발생 요인

-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정원조정 내역 (안 제2조)
 - 총정원 : 4,819명 → 4,828명(+9명)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 : 증원 9명(일반공무원 9명)
- 나. 추 계 결 과 : 인건비 3,814,157천원 정도 추가 소요
- 다. 채용조달방안 : 도비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세 출	3,813,157	584,604	790,385	801,450	812,670	824,048
인건비(일반공무원)	3,813,157	584,604	790,385	801,450	812,670	824,048
인건비(소방공무원)	0	0	0	0	0	0

※ 매년 임금인상률 1.4%(예상치) 적용 계산

6. 작성자 : 행정국 행정운영과장 서동경